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22 (수) 함명섭의원 외 2인
- 나. 회부일자 : 2008. 11.04 (화)
- 다. 상정일자 : 2008. 11.04 (화)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평창군의회 의원 함명섭)

- 가. 학교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예산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수도요금을 감면하므로서, 학생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현행 조례의 "요금 등의 감면"대상에 "교육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37조 제1항 제3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진영)

- 가. 본 조례안은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시설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의 시설 중 교육시설에 대하여 30%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 2007.7월~2008.6월까지 1년간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 현황을 보면 총 117,049천원으로 약 35,114천원의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창군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양로원, 보육원, 경로당, 노인회관, 영·유아원, 유치원, 교육시설 등은 30%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